제28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

『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제 안설명자료



2019. 6. .

서울특별시교육청

안녕하십니까?

기획조정실장 권 성 연 입니다.

서울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·조언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『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- □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
 - 학부모의 역할 수행과 교육활동 참여에 필요한 학부모교육 지원의 근거 마련으로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입니다.

□ 관련 법규는

○ "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."와 "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,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."고 규정하고 있는 「교육기본법」 제13조 입니다.

□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

- 먼저 조례 제명을 학부모교육활동 지원에 대한 내용을 포함 하도록 "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·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"로 변경하였습니다.
-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제6항입니다. 학부모교육이란 정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.

- 일부개정조례안 제19조에서 제21조입니다. 종전의 제19조 및 제20조를 각각 제22조 및 제23조 하고, 제19조 교육활동 지원 계획 수립, 제20조 교육활동 지원 사업, 제21조 학부모지원센터 운영으로 학부모 교육활동 지원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.
- □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